

변경 대비 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투자 대상	클래스 신설	업자 변경	결산	변동성
1	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투자신탁(주식)	○	-	○	-	-
2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투자신탁	-	○	○	-	○
3	미래에셋 EMP 밸런스스타일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-	-	○	-
4	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○	○
5	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투자신탁1호(UH)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-	○	○
6	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○	○
7	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-	-	○	○
8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호(주식)	-	-	-	○	○
9	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○	○
10	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○
11	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인컴월지급식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○	○
12	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○	○
13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○	○
14	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(분배형)	-	-	-	○	○
15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1호(H)(주식)	-	-	-	○	○
16	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○	○
17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○	○
18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○	○
19	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○	○
20	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-	○	○

2. 변경 사항:

- 1) 투자 대상 자산 삭제
- 2) 클래스 신설
- 3)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
- 4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5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3. 효력발생 예정일: 2020년 4월 24일(금)

4. 변경 내용:

- 1) 투자 대상 자산 삭제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7 조(투자 대상자산 등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~3. <생략></p> <p>4.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생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집합투자증권등”이라 한다.)</p> <p><이하 생략>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~3. <생략></p> <p>4. <삭제></p> <p><이하 생략></p>
제 18 조(투자 대상자산 취득한도)	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~3. <생략></p> <p>4.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</p> <p><중간 생략></p> <p>8.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~3. <생략></p> <p>4. <삭제></p> <p><중간 생략></p> <p>8.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</p>
제 19 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~3. <생략></p> <p>4.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</p> <p>가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나.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%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~3. <생략></p> <p>4. <삭제></p>

	<p><u>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u></p> <p><u>다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u></p> <p><u>라.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,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u></p> <p><u>마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{외국판매회사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}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u></p> <p><이하 생략></p>	<p><이하 생략></p>
<p>제 20 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	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제18조제1호 및 제4호</u>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<생략>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<u>제18조제1호 및 제4호</u>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<u>제18조제6호 내지 제8호, 제19조제2호 및 제5호</u>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제19조제2호 본문, <u>제4호 가목 및 제5호</u>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 1개월까</p>	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제18조제1호 및 제3호</u>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<생략>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<u>제18조제1호 및 제3호</u>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<u>제18조제5호 내지 제7호, 제19조제2호 및 제4호</u>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제19조제2호 본문, <u>제4호</u>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</p>

	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	아니한다.
--	---------------	----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<p><u>[집합투자증권등]</u></p> <p>- 투자비율: 40% 이하</p> <p>- 세부설명: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생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</p>	<삭제>
제 2 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<p><u>[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]</u></p> <p>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</p> <p>가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나.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%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다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라.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,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마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{외국판매회사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}</p>	<삭제>

	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 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	
--	---	--

2) 클래스 신설

펀드명	신설 클래스	판매 보수(%)	선취 판매수수료(%)	환매 수수료 (%)
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25 혼합자산투자신탁	종류 C-P2K	[아래 참조1]	-	-

[참조1] 판매보수

기간	판매보수율(%)
최초설정일~2020.12.31	0.29
2021.01.01~투자신탁해지일	0.27

[참조2] 가입자격

구분	가입자격
종류 C-P2K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함

3)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44 조 (집 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의 변경)	<p>① <u>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<생략></p> <p>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</p>	<p>①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<생략></p> <p>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</p>

<p>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<생략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<생략></p> <p>④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---	--

4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 20 증권투자신탁 1호(채권혼합)	5	5	3.59	4.77
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투자신탁1호(UH)(주식혼합-재간접형)	4	4	7.48	8.26
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4	3.93	5.98
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3	3	10.3	10.27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호(주식)	3	2	13.41	18.66
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5	5	4.56	4.98
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(주식)	2	2	-	18.97
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인컴월지급식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4	4.21	7.85
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3	2	13.56	19.17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3	3	11.69	12.06
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(분배형)	5	4	4.58	8.73
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투자신탁	3	4	-	5.28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1호(H)(주식)	2	2	21.63	23.48
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3	2	14.86	15.97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4	4.62	5.98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5.57	6.99
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6.58	7.69
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4	4	5.45	7.16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